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2024.02.06

# 목 차

## 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 [목적]
- 제 2 조 [적용범위]
- 제 3 조 [직무와 권한]

## 제 2 장 구 성

- 제 4 조 [구성]
- 제 5 조 [위원장]

## 제 3 장 회 의

- 제 6 조 [소집권자 및 개최]
- 제 7 조 [소집절차]
- 제 8 조 [결의방법]
- 제 9 조 [부의사항]
- 제 10 조 [관계인의 출석]
- 제 11 조 [의사록]

## 제 4 장 보 칙

- 제 12 조 [지원부서]
- 제 13 조 [운영규정]

## 부 칙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4. 02. 06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위메이드(이하 "회사"라 한다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(직무와 권한)

-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363조의 2 제 1항, 제 542조의 6 제 1항, 제 2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위원회는 제 1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배경과 내용, 비용,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(구성)

- 위원회 위원은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### 제 5 조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정함이 없을 경우 최초 위원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6 조(소집권자 및 개최)

-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7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 1 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 7 조(소집절차)

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2영업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 9 조(부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하고 위원회에 부의한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### 제 10 조(관계인의 출석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**제 11 조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**제 4 장 보 칙**

#### **제 12 조(지원부서)**

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
#### **제 13 조(운영지침)**

이 운영지침의 제·개정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4 년 02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.